



# 이슈분석

## *Issue Analysis*

일본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의 과학적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 이선영

프랑스의 장기실업 제로 지역 실험(TZCLD) | 양정승, 김신애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과 시사점 | 정다운

일본 홀리스 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사점 | 임덕영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관련 제도와 발전 과정 | 김정섭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호주, 캐나다,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최민재, 이요한

#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과 시사점

## The Enactment of the Accessibility Improvement Act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정다은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Chong, Da-Eun (Universität Regensburg)

2021년 독일 연방정부는 장애인에게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 「접근성 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유럽연합의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도입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2025년 6월 28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 내 많은 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제정 논의 시부터 시행 유예기간인 현재까지 「접근성강화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접근성강화법」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파악한 후,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들어가며

2021년 5월 20일 독일 연방의회는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Barrierefreiheit)<sup>1)</sup>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건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EU) 2019/882 지침 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을 통과시켰다(Deutscher Bundestag, 2021a). 약칭으로 「접근성강화법(BFSG: 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이라 불리는 이 법은 장애인에게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유럽연합 회원국 간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 요건들을 일치시킨 「유럽 접

1) 'Barrierefreiheit'은 '장애물 없음'으로 직역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접근성'으로 의역한다.

근성법(EAA: European Accessibility Act)<sup>2)</sup>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도입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Deutscher Bundestag, 2021b), 이른바 ‘1:1 도입(1:1-Umsetzung)’의 원칙에 따라 「유럽 접근성법」의 적용 범위와 동일한 적용 범위로 한정하여 제정하였다. 따라서 「접근성강화법」 또한 「유럽 접근성법」과 마찬가지로 노트북, 스마트폰, 현금자동인출기 등의 특정 정보기술(IT) 제품들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책(e-book),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의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럽 접근성법」 제31조 제1항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동법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적 토대를 2022년 6월 28일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2021년 4월 19일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연방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여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입법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는 기독교민주당(CDU: Deutsche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기독교사회당(CSU: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 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으로 이루어진 당시 대연정이 법률안 통과를 위해 의회에서 논의를 주도한 결과였다(Deutscher Bundestag, 2021c). 독일은 최고법인 「기본법(GG: Grundgesetz)」 제3조 제3항 제2문<sup>3)</sup>을 통해 장애인 차별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고, 「일반적 차별 금지법(AGG: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사회법전 제9권(SGB IX: Sozialgesetzbuch IX)」, 「장애인동등지위법(BGG: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연방참여법(BTHG: Bundesteilhabegesetz)」 등의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이미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체계를 탄탄히 마련해 놓고 있다(신옥주, 2014). 이러한 구조하에서 새롭게 제정된 「접근성강화법」은 장애물 없는 ‘포용적 사회(inklusive Gesellschaft)’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2; Tabbara, 2021). 그러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연방정부 제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과 녹색당(GRÜNE: Bündnis 90/Die Grünen) 등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었고, 특히 의결 전 연방의회 내 노동사회위원회(Ausschuss für

2) 공식 명칭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건들에 관한 2019년 4월 1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9/882 (EU) 지침(Directive (EU) 2019/88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이나, 대개 약칭인 「유럽 접근성법」으로 불린다. 「유럽 접근성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의 요건, 예외 사항 등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여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지을 뿐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유럽 접근성법」을 도입한 국내법이다(Bundesfachstelle Barrierefreiheit, 2022).

3)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Arbeit und Soziales)가 진행한 공청회에서 많은 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양한 비판적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 제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도 「접근성강화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독일의 이러한 논의는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관련 논의보다 앞서 있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독일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의 현 상황은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유사하여 시의성 측면에서도 독일 사례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신설·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21조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 장애인단체 사이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슬기, 2022).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독일 「접근성강화법」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을 파악한 후,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접근성강화법」의 주요 규정

### 가. 접근성 관련 규정

#### 1) 접근성 요건

「접근성강화법」 제3조 제1항 제2문은 접근성에 대한 정의 규정인 동시에 일반적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장애인이 제품 및 서비스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곤란함 없이, 그리고 원칙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찾아낼 수 있고, 이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장애물이 없는 상태, 즉 접근성을 갖춘 상태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접근성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동등지위법」 제4조<sup>4)</sup>의 내용과도 일치하여(Deutscher Bundestag, 2021b) 장애인 관련 법률 간에 일관적인 접근성 요건이 제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접근성 요건에 대한 입법 위임

「접근성강화법」 제3조 제2항은 연방노동사회부(BM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명시된 위임 범위에 따라 연방노동사회부는 제품의 디자인 및 제조(제1호), 상품의 디자인 및 접근 가능성과 서비스의 제공(제2호), 정보의 준비 방식(제3호)에 대한 요건에 관하여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을 제정할 수 있다. 이는 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 접근성법」 부칙상의 기술적 세부 요건들을 「접근성강화법」의 하위 법령 상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 위임에 따라 연방노동사회부는 2022년 6월 「접근성강화법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건에 관한 규정(BFSGV: Verordnung über die Barrierefreiheits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nach dem 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이하, 접근성강화법 규정)을 제정하였다.

## 3) 접근성 요건 적용의 예외

「접근성강화법」 제17조 제1항은 이 법상의 경제행위자(Wirtschaftsakteur), 즉 제조자(Hersteller), 수입업자(Einführer), 소매업자(Händler), 서비스 제공자(Dienstleister)에게 “불합리한 부담(unverhältnismäßige Belastung)”을 가하지 않을 때만 접근성 요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접근성 요건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판단은 경제행위자가 스스로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행위자가 접근성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추가로 과도한 조직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때는(Deutscher Bundestag, 2021b),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접근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경제행위자는 「접근성강화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감독청(Marktüberwachungsbehörde)에 이러한 판단에 대해 알려야 한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경제행위자의 판단에 관하여 문서로 기록하고 이

4) 「장애인동등지위법」 제4조의 규정은 장애인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곤란함 없이, 그리고 원칙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건축 또는 기타 시설, 교통수단, 기술적 일상용품, 정보처리 시스템, 음향·시각적 정보원과 통신 설비 및 기타 형성된 생활 영역들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접근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소형 기업(Kleinstunternehmen)에도 「접근성강화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접근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초소형 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불합리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예외 규정으로(Deutscher Bundestag, 2021b), 「접근성강화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10명 미만의 직원을 두고, 연 매출이 최대 2백만 유로(약 28억 원) 이하이거나 연 결산 총액이 최대 2백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 초소형 기업으로 인정된다. 또한 접근성 요건 준수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길 때, 예를 들어 제품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접근성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Deutscher Bundestag, 2021b) 「접근성강화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접근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

### 1) 제품

「접근성강화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은 동법 제1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먼저 소비자용 범용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과 이의 운영체제가 포함되는데(제1호),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이 이에 해당한다(Deutscher Bundestag, 2021b). 다음으로 지급단말기, 현금자동인출기, 승차권 자동판매기 및 자동체크인기와 같은 셀프서비스 단말기(제2호),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위해 이용되는 소비자용 단말기가 포함되는데(제3호), 스마트폰, 모뎀, 라우터가 이러한 제품에 해당한다(Deutscher Bundestag, 2021b). 또한 게임 콘솔(Spielkonsole)과 같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소비자용 단말기(제4호), 전자책 단말기(제5호)도 「접근성강화법」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 2) 서비스

「접근성강화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동법 제1조 제3항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먼저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포함되는데(제1호),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메일 전송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객 수송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는데(제2호),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여객 수송 관련 웹사이트, 모바일 서비스, 전자 티켓 및 관련 서비스, 교통 정보 공급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은행 서비스(제3호), 전자책 및 관련 소프트웨어(제4호), 전자상거래 서비스(제5호)도 「접근성강화법」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해당한다.

#### 다. 접근성 요건 준수에 대한 감독

「접근성강화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접근성 요건 준수에 대한 감독은 각 연방주(Bundesländer)가 수행한다. 동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접근성강화법」상의 시장감독청은 각 연방주의 법에 따라 시장감독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관청으로, 연방주는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시장감독청들의 사무 수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연방주는 제품의 접근성 요건 준수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연방주 시장감독청의 주된 사무는 접근성 요건 준수에 대한 감독이며, 접근성 요건 준수 위반에 대한 소추(Verfolgung) 사무이다. 이에 더해 「접근성강화법」 제21조 제4항 제1문 제1호에 따라 시장감독청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제행위자가 접근성 요건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조자, 수입업자, 소매업자가 자신에게 접근성 요건 준수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동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장감독청은 이들의 판단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1) 제품에 대한 감독

연방주 시장감독청은 제품이 접근성 요건 충족에 반한다는 단서가 존재할 경우 「접근성강화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접근성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먼저, 동법 제23조 제2항은 형식적 검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감독청은 제품이 동법 제19조가 규정한 CE 마크(CE-Kennzeichnung) 표시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제1호), 동법 제18조가 규정한 EU-적합성 증명서(EU-Konformitätserklärung)를 제시하고 있는지(제2호), 제품의 기술 관련 서류가 존재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제3호),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진술이 잘못

되거나 완전하지 않은지(제4호) 여부를 비롯해 「접근성강화법」상의 다른 형식상 의무들이 충족되었는지(제5호)를 검토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감독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경제행위자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시정되지 않을 때는 동 규정 제3항에 따라 제품의 시장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음으로,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실질적 측면의 검토에서는 하위 법령인 「접근성강화법 규정」이 상세히 규정한 제품의 접근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감독청은 「접근성강화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경제행위자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규정 제4항에 따라 제품의 시장 공급을 제한, 금지하거나 이미 공급된 제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다. 실질적 검토에서는 제품이 법령상의 모든 접근성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기 때문에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증명서 및 서류 미구비 등의 비교적 경미한 형식적 결함에 대한 것보다 더욱 엄격한 제재가 부여될 수 있다.

## 2) 서비스에 대한 감독

서비스에 대한 감독 또한 제품에 대한 감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실질적 측면에서 시장감독청은 「접근성강화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가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제28조 제3항에 따라 접근성 요건의 예외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내린 자체 평가가 옳은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존재할 경우, 시장감독청은 동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경제행위자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정되지 않을 때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시 한번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시장감독청은 동조 제3항에 따라 접근성 요건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 특히 일정 기간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접근성강화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형식적 측면의 검토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불충분한 것은 아닌지, 그러한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제시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제시되지 않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필수 정보에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설명 및 해당 서비스가 어떻게 접근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Deutscher Bundestag, 2021b). 만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감독청은 동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경제행위자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시정되지 않을 때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시 한번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시장감독청은 서비스의 시장 공급을 중지시키는 등 형식성을 갖추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라. 「접근성강화법」 시행일

「유럽 접근성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마련한 관련 법률들은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28일부터 동시에 발효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025년 6월 28일부터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성강화법」이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또한 존재하는데,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접근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품을 이용하여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접근성강화법」 제38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는 2030년 6월 27일까지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동 규정 제2문에 따라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은 최장 2030년 6월 27일까지 계약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접근성강화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셀프서비스 단말기에는 제품의 긴 수명을 고려하여 1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2025년 6월 28일 전에 설치한 셀프서비스 단말기는 「접근성강화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 3. 「접근성강화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연방의회 내 노동사회위원회는 전문가 및 산업계 이해관계인, 무엇보다 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5월 17일 연방정부가 제출한 접근성 강화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Deutscher Bundestag, 2021c). 공청회에서는 각 단체 및 전문가가 사전에 제출한 18개의 의견 표명서(Stellungnahme)를 바탕으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졌다(Ausschuss für Arbeit und Soziales, 2021). 이어 노동사회위원회는 공청회 이틀 뒤인 5월 19일 동 법률안에 대한 의결 권고서(Beschlussempfehlung)를 신속히 제

출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21d). 이는 일부 수정된 접근성 강화 법률안에 대한 의견 권고였는데, 대부분 수정 제안(Änderungsantrag) 및 결의 제안(Entschließungsantrag)을 통해 표명된 대연정의 의견에 바탕을 두어 법률안이 수정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1년 5월 20일 노동사회위원회의 권고대로 동 법률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Ausschuss für Arbeit und Soziales, 2021). 이렇게 접근성 강화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접근성법」이 제시한 최소 기준들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동 법률안에 대해 연방의회 의원들의 토론 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는 의회 회기 동안 「유럽 접근성법」의 최소 기준 외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요건이 더 논의될 수 있었음에도 의회가 장애인 관련 정책을 성가신 의무적 사무로 여겨 논의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였다(Miles-Paul, 2021). 많은 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다양한 비판적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이 중 법률안 수정에 반영된 의견은 극히 적었다. 예를 들어, 수정 전 정부 제출 법률안 제29조 제3항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성 요건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경제행위자의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장감독청의 두 차례 시정 요구 후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감독청이 접근성 요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많은 단체가 이러한 ‘임의규정(Kann-Bestimmung)’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Deutscher Blinden- und Sehbehindertenerverband e.V., 2021; Monitoring-Stell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2021; Sozialverband VdK Deutschland e.V., 2021), 결국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라는 자구로 수정되어 감독이 한층 강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들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첫째, 「접근성강화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비판이다. 「접근성강화법」은 「유럽 접근성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 「유럽 접근성법」과 같은 적용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접근성강화법」이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전자 제품 및 서비스만을 적용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외의 일상용품들, 직업 활동에 쓰이는 제품 및 서비스들, 건축 환경 등 장애인의 다양한 생활 영역과 이를 위해 쓰이는 제품 및 서비스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e.V., 2021; Bundesvereinigung Lebenshilfe e.V., 2021; LIGA Selbstvertretung c/o NETZWERK ARTIKEL 3 e.V., 2021; Monitoring-Stell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2021). 특히 장애물 없는 건축 환경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Tabbara, 2021). 「접근성강화법」에 따라 현금자동인출기, 티켓판매기와 같은 제품에 대한 디지털 환경상의 접근성이 향상되더라도 제품 소재지의 건축 환경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러한 제품에 아예 접근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접근성강화법」 제17조에 대한 비판이다. 일부 단체들은 경제행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있을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접근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도록 허용한 동 규정이 지나치게 경제행위자들의 이익과 편의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Deutscher Blinden- und Sehbehindertenverband e.V., 2021; Deutscher Verein der Blinden und Sehbehinderten in Studium und Beruf e.V., 2021; Monitoring-Stell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2021; Sozialverband VdK Deutschland e.V., 2021). 「접근성강화법」 부칙 제4조에 불합리한 부담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비용 측면의 기준들만 제시되어 있어 그 외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경제행위자의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다. 이 관점에서는 경제행위자가 자신의 우선순위, 시간 및 지식 정도를 근거로 접근성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강화법」상에 혹은 하위 법령인 「접근성강화법 규정」상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연방주의 시장감독청과 관련된 비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근성 요건 준수에 대한 감독은 각 연방주가 정하는 관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체계적인 시장감독을 위해 연방 차원의 감독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Deutscher Blinden- und Sehbehindertenverband e.V., 2021; ISL e.V. - Bundesgeschäftsstelle, 2021; Monitoring-Stell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2021; Sozialverband VdK Deutschland e.V., 2021). 이는 연방주에 의해 시장감독 사무가 수행될 경우 연방주별로 임의적인 관할권 분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또한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허용과 관련된 비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셀프서비스 단말기에 대해서는 제품의 수명을 고려하여 최대 15년까지의 유예기간이 보장되고 있는데, 「접근성강화법」의 발효일이 2025년 6월 28일인 점을 고려하면, 셀프서비스 단말기는 2040년에 이르러서야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Deutscher Blinden- und Sehbehindertenverband e.V., 2021; LIGA Selbstvertretung c/o

NETZWERK ARTIKEL 3 e.V., 2021; Monitoring-Stell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2021; Sozialverband Deutschland, 2021; Sozialverband VdK Deutschland e.V., 2021). 이 관점에서는 나아가 유예기간의 축소 또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 4. 나오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설·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21조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논의 중이다. 독일의 「접근성강화법」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품 및 서비스의 적용 범위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 법률은 적어도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과 같은 중요 영역을 공통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독일의 앞선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 체계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 접근성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인 「접근성강화법」을 제정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상세 사항들을 정부 부처에 의해 제정된 「접근성강화 규정」상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21조 두 규정만을 신설·개정하였고, 제15조 제4항<sup>5)</sup>과 제21조 제7항<sup>6)</sup>에 따라 두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하위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접근성강화법」은 총 10장, 38개 조문, 4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법률의 적용 범위, 접근성 요건 및 예외 규정, 경제행위자의 의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감독, 범칙금 규정 및 유예 규정 등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제반 사항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 상위 법률의 제정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더욱 명확히 보장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제정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더욱 체계적인 규정 방식에 해당할 수 있다. 2022년 6월 27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5)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관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고안된 임시 시행령안이 공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시행령안의 규정들이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지적이 있다(구자창, 2022). 이는 신설된 제15조 제4항과 제21조 제7항의 입법 위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서 기인한 것이기도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독일과 같이 개별법을 두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범위를 더욱 넓히는 동시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의 방대함과, 정부 주도로 제정된 상세한 시행령을 정작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실무적 문제 또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접근성강화법」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많은 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신속한 제정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과 편의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규정이라고 평가받는 접근성 준수 의무의 예외 규정들이 「접근성강화법」에 그대로 규정되었고, 법률 제정 이후에도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 및 장애인의 이익과 접근성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행위자들의 부담을 비례적으로 형량하기 위해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해 다양한 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 전문가,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제공자(공공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300명 이상/100명 이상 300명 미만/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등)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 허용과 단계적 시행 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임시 시행령안에는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규정들은 법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8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6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모바일 앱 관련 규정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후인 2023년 7월 28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 6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이슬기, 2022).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접근성강화법」에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유예기간의 축소 또는 폐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접근성강화법」에는 제공자 구분에 따른 단계적 적용에 관한 규정은 없는 반면, 초소형 기업에 접근성 요건 준수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만이 존재한다. 다만 「접근성강화법」에는 경제행위자 자신의 판단으로 접근

성 요건 준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언급한 규정들 모두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유예기간 및 단계적 적용 도입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이에 대한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접근성강화법」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해 비판적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지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작된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 대한 논의와 이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독일 「접근성강화법」의 상세한 규정들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제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탄탄한 법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가고 있는 독일에서 「접근성강화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독일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독일의 「접근성강화법」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구자창. (2022. 7. 12.). "무인주문기는 유리장벽"... 시각장애인, 햄버거집 줄 선 이유.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66734&code=61121111&cp=nv>에서 2022. 8. 8. 인출.
- 신옥주. (2014). 독일의 장애인 통합을 위한 법제연구. **유럽헌법학회**, 16, 293-337.
- 이슬기. (2022. 6. 27.).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 3년 기다려라? 반발. **에이블뉴스**.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627174456259269>에서 2022. 8. 8. 인출.
- Ausschuss für Arbeit und Soziales. (2021). Materialien zur öffentlichen Anhörung von Sachverständigen in Berlin am 17. Mai 2021. *Ausschuss-Drs.* 19(11)1137.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37934/c9129f1f63a13a97869681962620d69b/19-11-1137-Materialzusammenstellung-data.pdf>
-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e.V. (2021). Information für den Ausschuss. *Ausschuss-Drs.* 19(11)1094.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41058/88309574f996c281c99b9be0f9cbc56a/19-11-1094-unverl-SN-BAGFW-data.pdf>
- Bundesfachstelle Barrierefreiheit. (2022). *Der "European Accessibility Act"*.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fachstelle-barrierefreiheit.de/DE/Fachwissen/Produkte-und-Dienstleistungen/European-Accessibility-Act/european-accessibility-act\\_node.html](https://www.bundesfachstelle-barrierefreiheit.de/DE/Fachwissen/Produkte-und-Dienstleistungen/European-Accessibility-Act/european-accessibility-act_node.html) 2022. 8. 8.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2). *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 Retrieved from <https://www.bmas.de/DE/Service/Gesetze-und-Gesetzesvorhaben/barrierefreiheitsstaerkungsgesetz.html> 2022. 8. 8.
- Bundesvereinigung Lebenshilfe e.V. (2021). Information für den Ausschuss. *Ausschuss-Drs.* 19(11)1111.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41642/8815e3d18f6a5949f96bb9466bc66159/19-11-1111-unverl-SN-Lebenshilfe-data.pdf>
- Deutscher Blinden- und Sehbehindertenverband e.V. (2021). Schriftliche Stellungnahme. *Ausschuss-Drs.* 19(11)1103. Retrieved from [www.bundestag.de/resource/blob/841232/9d27ac6d98ad2a5970e9e083bde96640/19-11-1103-SN-Verband-DBSV-data.pdf](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41232/9d27ac6d98ad2a5970e9e083bde96640/19-11-1103-SN-Verband-DBSV-data.pdf)
- Deutscher Bundestag. (2021a). *Barrierefreiheit und Künstlersozialkasse angepasst*.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1/kw20-de-barrierefreiheit-840244> 2022. 8. 8.

- 
- Deutscher Bundestag. (2021b).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 Entwurf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und zur Änderung des Jugendarbeitsschutzgesetzes. *BT-Drs. 19/28653*. Retrieved from <https://dserver.bundestag.de/btd/19/286/1928653.pdf>
- Deutscher Bundestag. (2021c). *Kritik an Regierungsentwurf zur Barrierefreiheit von Produkten*.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1/kw20-pa-arbeit-soziales-barrierefreiheit-840416> 2022. 8. 8.
- Deutscher Bundestag. (2021d).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es Ausschusses für Arbeit und Soziales(11. Ausschuss). *BT-Drs. 19/29893*. Retrieved from <https://dserver.bundestag.de/btd/19/298/1929893.pdf>
- Deutscher Verein der Blinden und Sehbehinderten in Studium und Beruf e.V. (2021). Information für den Ausschuss. *Ausschuss-Drs. 19(11)1147*.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42382/58942032a2fd0a24c12990f1ca2ed7e5/19-11-1147-unverl-SN-Verein-der-Blinden-und-Sehbehinderten-data.pdf>
- ISL e.V. – Bundesgeschäftsstelle. (2021). Information für den Ausschuss. *Ausschuss-Drs. 19(11)1124*.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41700/16bf48ed302d2f9af485e0bc3ac07450/19-11-1124-unverl-SN-ISL-data.pdf>
- LIGA Selbstvertretung c/o NETZWERK ARTIKEL 3 e.V. (2021). Schriftliche Stellungnahme. *Ausschuss-Drs. 19(11)1110*.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41520/b335853b9ca5b50d9e4590e4027acd19/19-11-1110-SN-Verband-LIGA-data.pdf>
- Miles-Paul, O. (2021. 4. 22.). Umsetzung von Barrierefreiheit lästige Pflichtübung. *kobinet-nachrichten*. Retrieved from <https://kobinet-nachrichten.org/2021/04/22/umsetzung-von-barrierefreiheit-laestige-pflichtuebung/> 2022. 9. 4.
- Monitoring-Stell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2021). Schriftliche Stellungnahme. *Ausschuss-Drs. 19(11)1125*.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41708/047adce43d4e6c582205e8f97d451c59/19-11-1125-SN-Verband-UN-BRK-data.pdf>
- Sozialverband Deutschland. (2021). Information für den Ausschuss. *Ausschuss-Drs. 19(11)1090*.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41056/30202e18656bc2dc52f6226917010789/19-11-1090-unverl-SN-SoVD-data.pdf>
- Sozialverband VdK Deutschland e.V. (2021). Schriftliche Stellungnahme. *Ausschuss-Drs. 19(11)1089*.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41054/957efff85419f9ef772bceffb482cb56/19-11-1089-SN-Verband-VdK-data.pdf>
- Tabbara, A. (2021). Barrierefreiheit für elektronische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 das 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 *NZS*, 13, 497–502.